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우식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

대구지방검찰청

보도자료

2023. 3. 23.(목)

제 목

실업급여 4억원을 편취한 브로커 5명 등 총 54명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 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대구지검 형사4부(부장검사 서경원)는, 실업급여 약 4억원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사건을 수사하여, 주요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('22. 12. 6)한데 이어, '23. 3. 20. 나머지 브로커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, 이에 가담한 부정수급자 49명을 약식기소하였음

-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, 브로커들이 친척이나 지인들을 모집하여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임

-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서,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됨

※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

- 앞으로도 검찰은 노동청·경찰과 협력하여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음

I

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

- 브로커 : A(남, 37세, 무직), B(남, 38세, 농산물도매업), C(남, 27세, 회사원), D(남, 36세, 농산물도매업), E(남, 23세, 유통업)
- 허위 근로자 : 49명

● 공소사실 요지

- 브로커인 피고인 A, B, C, D, E는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있던 업체(○○재활용, ○○청과 등) 앞으로 각기 모집한 사람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
- 이후 허위 근로자들은 384만원~1,563만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지급받음
- 위와 같은 방법으로 ① 피고인 A는 '20. 8.~'22. 5. 허위 근로자 29명과 공모하여 합계 2억 2,183만원의 실업급여를, ② 피고인 B는 '21. 6.~'21. 11. 허위 근로자 9명과 공모하여 합계 7,034만원의 실업급여를, ③ 피고인 C는 '21. 10.~'22. 3. 허위 근로자 6명과 공모하여 합계 4,490만원의 실업급여를, ④ 피고인 D는 '20. 9.~'21. 7. 허위 근로자 6명과 공모하여 합계 4,328만원의 실업급여를, ⑤ 피고인 B, E는 '20. 8.~'21. 11. 허위 근로자 3명과 공모하여 합계 3,246만원의 실업급여를 각 부정수급

II

주요 수사 경과

- '22. 6. 대구동부서, 수사착수(대구노동청의 수사 의뢰)
- '22. 11. 14. A 구속영장 발부
- '22. 12. 6. 대구지검, A 구속 기소
- '23. 3. 20. 대구지검, B, C, D, E 각 불구속 기소, 허위 근로자 49명 각 약식 기소



수사의 의의

[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의 문제점]

- 브로커인 피고인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‘쉽게 돈을 벌 방법이 있다’라고 접근
 - 허위 근로자 피고인들(무직 34명, 가정주부 2명, 일용직 2명, 대학생 1명 등)은 위와 같은 방법의 실업급여 수급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음
-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,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로서, 그 부정수급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함
-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수급액 환급은 물론,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하고,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, 가볍게 여긴 범행 가담이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됨

부정수급액이 700만원이라도, 부정수급 가담자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실제 금액은 고용보험료, 브로커 수수료 등을 제외한 200만원 내외에 불과하고,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(700만원) 반환과 수급액의 5배(3,500만원) 이하 추가 징수를 받게 되며,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임

[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수사]

- 노동청은 허위 근로자 1인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구체적 범행 구조를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충실히 확보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, 검찰과 경찰은 긴밀한 협력 하에 방대한 자료 분석, 다수 관계자 조사를 통해 범행 실체의 전모를 밝혀냈음